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(안 제46조)

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“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”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
나. 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(안 제50조제17호)

「전파법」 개정(제29조제3항제4호)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“「공항시설법」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”가 포함됨에 따라 「공항시설법」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항공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50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항이나 비행장에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행위

부 칙

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0조제17호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단서 신설>	제46조(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제5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 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.
제50조(금지 행위) 법 제56조제6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1. ~ 16. (생략) <신설>	제50조(금지 행위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「항

	공안전법」 제127조제2항 또 는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항이나 비 행장에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행위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35